1. 개정이유

비행장에서 이동하는 항공기, 차량, 장비,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활주로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항공청의 관할공항 활주로 안전관리를 제고하고 기동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의 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 ‘장비’, ‘계류장’ 등 일부 용어의 정의를 법령 및 고시와 일치하도록 개정(안 제2조)

나. ‘활주로침범’ 정의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의와 일치시키고,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활주로침범’ 해석의 모호함을 줄이고자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제10조)

다. 「항공안전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으로 위임된 관할 기관에 대한 항공안전관리 중 활주로 관련 안전관리사항을 총괄할 수 있도록 ‘지역활주로 위원회’를 신설(안 제7조, 제9조)

라. 관련 고시 ‘항공교통관제절차’상 복명복창 사항, 용어 등 일치(안 제11조, 제13조, 제16조)

마. 국제민간항공기구 ‘활주로침범 예방 매뉴얼’에 따른 운영방법, 근무교대 절차 등을 기술(안 제15조, 제17조)

바. 관련 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운전자 교육사항 등을 명시(안 제30조)

사. 비행장 기동지역 내 차량 오진입 증가에 따라, 기존 이동지역 운전자 교육과 기동지역 운전자 교육을 분리하여 기동지역 출입 및 이동 관리를 도모함(안 제37조)

아. 근거조문 추가, 상위법 위임 · 직제변경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 등(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2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자. 조문을 이동하여 조문번호 및 자구를 수정(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차. 재검토기한 연장 및 부칙 신설(안 제32조 및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488호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일부개정고시안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시는「항공안전법」제83조”를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한국공항공사법」,「인천국제공항공사법」등의”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동력 및 비동력 기기”를 “용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공항”을 각각 “비행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공항 내에서 여객 승하기, 화물·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주유, 주기, 제빙·방빙”을 “비행장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우편물 적재·적하, 급유, 주기, 제·방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활주로 침범(Runway Incursion)”이란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설정된 구역 및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에 항공기, 차량 또는 사람이 침범하거나 부적절하게 위치하는 등의 비행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13. “지역 활주로 안전위원회(Regional Runway Safety Committee)”

란 지방항공청 소속 공항의 활주로 안전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전파 등을 목적으로 지방항공청에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항공관제과장)”을 “(항공교통과장)”으로, “안전위원회 및 안전팀”을 “안전위원회, 지역 활주로 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 고시), 공항안전기준 및 운항기술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교통관제절차」,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AEROPLANES)」,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HELICOPTERS)」”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공항운영자”를 “활주로 안전위원회 및 지역 활주로 안전위원회 위원,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및 공항운영 관계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하 “위원회“라 한다)」와”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 지방항공청에 「지역활주로 안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2회, 안전팀의 경우는 분기별”을 “연1회, 지역위원회 및 안전팀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기타, 위원회”를 “위원회, 지역위원회”로, “위원장 및 팀장이 따로”를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안전팀의 위원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 Committee)”를 “(위원회 구성 등 Committe

e)”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항공관제과장”을 “항공교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6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공안전정책과장

2. 항공운항과장

3. 항행위성정책과장

5. 공항운영과장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지역 내에서의 항공기, 사람, 차량・장비(이하 “차량 등” 이라 한다.)의 이동에 대한 통제와 안전사항에 대한 의견 조정・협의

2. 국가활주로 안전계획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이행

3. 활주로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

4. 활주로 안전 증진

5. 그 밖에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지역위원회 구성 등 Regional Committee)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항공청의 항공교통분야 고위관리자(「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고위관리자를 말한다.)로 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지방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안전관리자, 항공사의 운항안전팀 및 공항운영자 등으로 한다.

④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여야한다.

1. 지방항공청 관할 공항의 활주로 안전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전파
2. 지방항공청의 항공교통분야 안전관리 이행계획에 따른 활주로 안전 관련 사항 구축 및 이행
3. 지방항공청 관할 공항의 안전팀 회의 결과
4. 그 밖에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지역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포함하여 10인 이내”를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관제기관의 장이 되며,”를 “각 비행장관제업무기관의 부서장이 되며, 팀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안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위한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여야한다.

1. [별표 1] 예시에 따른 자체 활주로 침범 예방점검표를 반기별로 점검
2. 관할 공항의 활주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조치
3. 공항별 활주로 관심 관찰지점(Hot Spot) 지정 및 검토
4. 공항시각 지원시설 개선
5. 그 밖에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④ 안전팀은 제3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지역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위원회”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제4장 조종사 절차(Flight Crew Procedures)”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4조 앞에 “제5장 차량・장비 운행절차(Ground Vehicle Operation On

Airport)”를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근무교대 Position Hand-over) 관제사는 근무교대 시 모든 교통상황을 인지하여야하며 근무교대 점검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항공교통관제사는 조종사 및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복명복창을 요구하여 허가사항 및 지시사항이 올바르게 이해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복창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복창에 틀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한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항공로 허가사항
2. 활주로 상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허가 및 지시사항
3. 관제사에 의해 발부되었거나 ATIS(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에 포함된 사용 활주로, 고도계 수정치, 2차 감시레이더 코드 및 고도・방위・속도 지시
4. 그 외의 허가사항(조건부 허가를 포함) 및 지시사항은 이해하였고

그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복창하도록 하거나 이해 여부(Acknowledge)를 알리도록 한다.

③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항공교통관제사-조종사간 데이터 통신(CPDLC)에 의하여 항공교통관제 허가 또는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복창을 아니할 수 있다.

④ 항공교통관제사는 활주로침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지시를 하는 경우 항공기 조종사, 차량 등의 운전자 및 사람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활주로의 진입(enter)
2. 활주로 착륙(land on)
3. 활주로 이륙(take off from)
4. 활주로 진입 전 정지(hold short of)
5. 활주로 횡단(cross)
6. 활주로 상의 주행(taxi) 및 역주행 (backtrack)

제10조(활주로 침범 Runway Incursion) ① 제2조11호에 따른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설정된 구역 및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은 비행장 기동지역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공항운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담당 기관이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한다.

1. 활주로
2. 활주로와 활주로 정지 위치 사이의 표면

② 제2조11호에 따른 항공기, 차량 또는 사람이 “부적절하게 위치하는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공교통관제사의 허가 또는 지시 없이 제1항에 따른 보호 지역에 침범한 경우

2. 항공교통관제사의 부적절한 허가 또는 지시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 지역에 침범한 경우

③ 지방항공청은 소속 기관에서 발생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7호에 따른 항공안전문제(Safety Issue) 중 활주로 관련 사항은 해당 사건으로부터 위해요인 식별, 개선조치 필요사항 확인, 안전권고 발부 등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자체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5에 따른 활주로 침범 분류표를 사용 할 수 있다.

④ 비행장 기동지역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활주로 침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정지선등과 활주로침범 자동경고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앞에 “제3장 항공교통관제사 절차(Air Traffic Controller Procedures)”를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항공교통관제사 업무 절차(Air Traffic Controller Procedures)

제12조(종전의 제11조) 제1항 전단 중 “발부”를 “비행허가(En-route Clearance)를 발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륙(Take-off)이란 용어는 항공기 이륙을 허가(Cleared for take-off)하거나, 이륙을 취소(Cancel a take-off clearance)할 때에만 사용하여야하며 그 외의 경우 이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Departure” 또는 “Airborne”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제1항 후단 중 “Position이다”를 “Position(Point)이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류장관제탑에서 관제탑 또는 지상관제사에서 국지관제사로 그”를 “국지관제사로 관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예(Example)”를 “예시(Example)”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PILOT : CROSS 06L, TAXI TO HOLDING POINT 06R ABC346.

주(Note) : ICAO 비표준용어인 “Position and hold”은 북미에서 2010년까지 Line-up 허가로 사용된 용어로 복창 내용 경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중 “예(Example)”를 “예시(Example)”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의 제목 “(정지선 Stop bars)”를 “(정지선등 Stop bars)”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지선등(Stob bars)이 설치된 비행장 관제사는 항공기와 차량을

정지・대기시킬 목적으로 정지선등을 점등하며 항공기와 차량을 진행시키려면 정지선등을 소등하여야 한다.

② 관제사는 정지선등이 켜진 경우 항공기와 차량에게 활주로 진입 또는 횡단을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지선등의 조작 불능 등 우발적인 상황에서는 항공기 유도 차량(Follow Me Car) 등 비상절차를 사용하여 점등된 정지선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관제탑과 계류장관제탑이”를 “계류장관제업무가”로, “공항의 관제사는”을 “공항에서는 항공기가”로, “Position”를 “Position(Point)”로, “항공기는 계류장관제탑에서 관제탑으로”를 “계류장관제기관에서 관제탑으로 관제권을”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차량・장비”를 “차량”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 전단 중 “관제탑은 활주로 안전문제에 대한 교훈학습 절차로서”를 “비행장을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활주로 안전 관련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있었다면”을 “있었다면 해당 사항을”로 한다.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조종사 업무 절차(Flight Crew Procedures)

제20조(종전의 제19조)제2항 중 “에러”를 “실수 및 착오”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1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외의 허가사항(조건부 허가를 포함) 및 지시사항은 이해하였고 그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복창하거나 이해 여부(Acknowledge)를 알

린다.

제23조(종전의 제22조) 제1호나목 중 “관재사”를 “관제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확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종사는 다른 항공기의 지시 또는 허가를 따르지 않도록 유사 호출부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조종사는 특히 시정이 악화되거나 야간에 “Line Up and Wait”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경계를 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활주로에 진입, 착륙, 이륙, 횡단, 진입 전 대기, 활주로 상 주행 및 역주행하는 경우 ATC와 교신을 반드시 유지하여 활주로 상에서의 충돌 잠재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1) 활주로 이 · 착륙 중에 “Line Up and Wait” 대기 지시를 할 때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조종사는 이륙허가를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항공기를 살펴야 한다.

(2) “Line Up and Wait” 등 대기지시를 받은 후 적당한 시간 이내에 이륙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반드시 관제사를 호출하여 다음과 같이 교신한다.

“(Call sign) Ready for Departure (Runway designator or intersection)”

주(Note) : 활주로에 정대하여 대기중인(Line up and wai

t) 상황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분석한 결과 “Line Up and Wait”를 지시한 시간과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한 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2분 이상이었다. 조종사는 예정되는 지연에 대하여 관제사로부터 조언이 없을 때는 활주로에 정대 및 대기 지시 후 시간 경과를 고려하여 관제사에게 활주로 상에 대기하고 있음을 알리는 등 적절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종전의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2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차량 등 운행절차(Ground Vehicle Operation On Airport)

제25조(종전의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이동지역에서 인원 및 차량 등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갖는다.

② 공항운영자는 관할 공항의 규모, 혼잡성 및 운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이동지역을 출입하는 인원 및 차량 등을 관리하고 출입 및 운영과 관련한 훈련 및 절차 등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이 프로그램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행장에서의 사람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등에 관한 사항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Note) : 차량 등의 운전자가 비행장에서 다수의 활주로 침범을 일으킴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인원·차량 등을 활주로 안전 관련 고위험 대상으로 간주하여 통제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항의 이동지역 내 차량 등의 요건 등 출입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차량등의 운전자 요건
2. 차량 등의 요건
3. 기동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등의 요건
4. 등록된 차량 등의 등록기호 표시
5. 차량 등의 안전도 검사
6. 그 외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공항의 이동지역 내에서 건설작업 또는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임시로 사용되는 차량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동지역에서 차량 등의 운행 절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동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등은 무전기가 장치 또는 휴대되어 있거나 무전기가 장치 또는 휴대된 차량 등의 호송을 받아야 한다.
2. 속도제한
3. 다음 사항의 금지

가. 다른 차량 등 또는 지상이동중인 항공기 앞지르기

나. 시동중인 차량 등으로부터 운전자 이탈

다. 서비스 중인 항공기 밑으로 운행

라. 운행이 허용된 곳 이외의 여객 탑승교 밑으로 운행

4. 차량 등이 등화를 켜야 하는 때를 규정

5. 가능한 한 전용도로의 경계선 및 주행선 이용 요건

6. 차량 등의 주정차가 가능한 곳과 금지된 곳의 위치

7. 통행우선권(예, 항공기, 비상 차량 등, 기타 차량 등)

8. 차량 등의 서비스 장소

9. 이동지역에서 무전기 고장에 대한 절차

10. 이동지역에서 차량 등이 포함된 모든 사고의 보고

11. 차량 등의 탑승객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29조,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8조) 및 제28조(종전의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공항의 차량 등 Vehicle on airports)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공항 이동지역에서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활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운항·정비 서비스

2. 화물·여객 서비스

3. 비상 상황 대응

4. 공항유지 지원

②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이동지역 내 비일상적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

1. 이동지역 작업

2. 항공기 전시 및 에어쇼

3. 중요인사의 출발 · 도착 영접

4. 상업사진촬영

5. 그 외 관할 지방항공청과 협의된 사항

③ 공항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비일상적인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동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차량 등의 운행 Vehicle operations) ① 공항 이동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 등은 이동지역을 가로질러서는 아니되고 정해진 차량 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2. 차량 등의 운전자가 활주로를 횡단해야 하는 때에는 관제탑의 별도 지시가 있지 않는 한 활주로 시단 또는 종단에서 횡단하여야 한다.

3. 이동지역에서 운용되는 차량 등은 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 또는 깃발을 달아야 하며 야간에는 상향등을 제외한 적절한 조명장치를 켜야 한다.

② 기동지역을 출입하는 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활주로(진입, 횡단 및 개방 등)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그에 따르겠다는 것을 무

선교신을 통하여 복창하여야 한다.

제29조(종전의 제27조)의 제목 “(차량・장비 운전자 요건 Vehicle operator requirements)”를 “(차량 등의 운전자 요건 Vehicle operator requirements)”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항의 제 규정”을 “공항 이동지역”으로, “교육을”을 “교육훈련 및 평가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항의 이동지역 내에서 차량 등의 운전자는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공항운영자의 운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운전자 교육훈련 및 평가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운전자 지침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0조의 제목 “(차량・장비 출입통제 Vehicle access control)”를 “(이동지역 운전자 교육 Airside Vehicle Driver Training)”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항운영자는 관할 공항 이동지역에 출입하여 차량 등을 운전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운영해야한다. 이동지역 운전자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점검 등을 목적으로 기동지역을 상시 출입하는 운전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모든 활주로(연결유도로 포함), 대기지점, 유도로 및 계류장

2. 활주로, 대기 지점, CAT-I/II/III 운항과 관련된 모든 표지판, 표면 표지 및 등화

3. 유도로와 관련된 모든 표지판, 표면 표지 및 등화

4. 이착륙 또는 지상이동 항공기 주변 운행의 위험

5. 위험상황의 식별 및 완화 조치의 평가

6. ILS 보호구역, 안테나, RVR 장비 및 기타 기상 장비 등 항법 보조시설

7. 주로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표준 지상이동 경로에 대한 지식

8. 특정 지역 또는 경로에 대해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명명 규칙

9. 항공기 운항 안전을 보장하며 활주로 및 유도로를 개방하기 위한 공항별 국지 절차

10. 차량 등의 운전자가 차량 등의 경로 내에서 시각적으로 고정 및 이동 물체를 관찰하는 방법

11.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기타 통제부서와의 정확하고 간결한 교신방법

12. 이동지역에서 차량 등이 운행하고 있는 동안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주(Note) : 차량 등의 운전자의 주변상황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는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운전자는 차량 등에 주의력을 집중하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상황인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모호하거나 불완전한 교신, 운전자 피로와 스트레스 등은 상황인식을 저하시키는 요인

으로, 특히, 장비고장, 안개, 강우, 강설 등은 안전 운전 조건을 더욱 저하시키며 운전자의 상황인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③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에서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상황인식을 증대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 혼잡, 고속질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등 경로에 표지 또는 표지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34조를 제31조로 한다.

제31조(종전의 제34조)제1항 중 “별표 3”을 “별표 20의2”로 한다.

제35조를 제32조로 한다.

제32조(종전의 제35조) 중 “2024년 11월 30일”을 “2026년 11월 30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Purpose)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Purpose) --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
제3조 (용어의 정의 Definition of terms)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운영자(Airport Operator)”란 「한국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의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Definition of terms) ----------. 1.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계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장비(Equipment)”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동력 및 비동력 기기를 말한다.	4. ---------- 용구----------.
5.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및 계류장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5. ---------- 비행장----------.
6. “기동지역(Maneuve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주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이동지역 중 계류장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6. ---------- 비행장----------.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계류장(Apron)”이란 공항내에서 여객 승하기, 화물·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주유, 주기, 제빙·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8. ---------- 비행장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우편물 적재·적하, 급유, 주기, 제·방빙 ----------.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11. “활주로 침범(Runway Incu	11. “활주로 침범(Runway Incu

rsion)”이라 함은 항공기, 차량 또는 사람이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침범 등을 포함한 공항에서 발생된 사건을 말한다.	rsion)”이란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설정된 구역 및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에 항공기, 차량 또는 사람이 침범하거나 부적절하게 위치하는 등의 비행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지역 활주로 안전위원회(Regional Runway Safety Committee)”란 지방항공청 소속 공항의 활주로 안전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전파 등을 목적으로 지방항공청에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3.·14. (생 략)	14.·15. (현행 제13호 및 제14호와 같음)
제4조 (일반사항 General) ① (생략)	제4조(일반사항 General)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항공관제과장)은 이 고시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활주로 안전위원회 및 안전팀의 활동에 관한 업무 및 각 분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항공교통과장)---------- 안전위원회, 지역 활주로 안전위원회----------.
③ 이 프로그램은 안전사고 및	③ ----------

준사고의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 고시), 공항안전기준 및 운항기술기준을 참조한다.	---------- ---------- --------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교통관제절차」,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AEROPLANES)」,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HELICOPTERS)」---.
④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공항운영자 등은 국제민간항공기구 교범 9870 (활주로 침범예방 매뉴얼)에서 권고하는 공항자원관리훈련과정(Aerodrome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Course) 등을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④ 활주로 안전위원회 및 지역 활주로 안전위원회 위원,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및 공항운영 관계자 ---------- ---------- ---------- ---------- --.
제5조 (구성 Organiz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장내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이행 및 안전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활주로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제5조(구성 Organization) ① --- ---------- ---------- ---------- ---------- ----------(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각 공항에 「공항 활주로 안전팀(이하 “안전팀“이라 한다)」을 둔다.	한다)」, 지방항공청에 「지역 활주로 안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 ----------.
② 회의 주기는 위원회는 연2회, 안전팀의 경우는 분기별 1회를 개최하되, 필요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 연1회, 지역위원회 및 안전팀의 경우에는 반기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타, 위원회 및 안전팀의 위원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팀장이 따로 정한다. 단, 안전팀의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④ 위원회, 지역위원회 ---------- 위원장이 ----------. 다만, 안전팀의 위원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 Committee) <신 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Committee)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항공관제과장으로 한다.	② ---------- 항공교통과장----------.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기본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의 사람이 된다.
1. 운항정책과장	1. 항공안전정책과장
2. 운항안전과장	2. 항공운항과장
<신 설>	3. 항행위성정책과장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5. 공항운영과장
4. 공항안전과장	<삭 제>
5. 항행시설과장	<삭 제>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지역 내에서의 항공기, 사람, 차량·장비(이하 “차량 등” 이라 한다.)의 이동에 대한 통제와 안전사항에 대한 의견 조정·협의
	2. 국가활주로 안전계획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이행
	3. 활주로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
	4. 활주로 안전 증진
	5. 그 밖에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7조(지역위원회 구성 등 Region

	al Committee)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항공청의 항공교통분야 고위관리자(「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고위관리자를 말한다.)로 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지방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안전관리자, 항공사의 운항안전팀 및 공항운영자 등으로 한다. ④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여야한다. 1. 지방항공청 관할 공항의 활주로 안전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전파 2. 지방항공청의 항공교통분야 안전관리 이행계획에 따른 활주로 안전 관련 사항 구축 및 이행 3. 지방항공청 관할 공항의 안전팀 회의 결과 4. 그 밖에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역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지역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팀 구성 Safety team) ① 안전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안전팀의 팀장은 각 관제기관의 장이 되며, 각 지방청 관할 소속의 운항안전팀, 공항운영자가 이에 속한다. <신 설>	제8조(안전팀 구성 Safety team) ① ----------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 ② ---------- 각 비행장관제업무기관의 부서장이 되며, 팀원은 ----------. ③ 안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위한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여야한다. 1. [별표 1] 예시에 따른 자체 활주로 침범 예방점검표를 반기별로 점검 2. 관할 공항의 활주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조치 3. 공항별 활주로 관심 관찰지점(Hot Spot) 지정 및 검토 4. 공항시각 지원시설 개선 5. 그 밖에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신 설>	④ 안전팀은 제3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지역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임무 Task) ①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지역 내에서의 항공기, 사람, 차량 등의 이동에 대한 통제와 안전사항에 대한 의견 조정·협의 2. 국가활주로 안전계획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이행 3. 활주로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 4. 활주로 안전 증진 5. 그 밖에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안전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활주로 침범 예방 점검표에 따라 분기별로 점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2. 관할 공항의 활주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조치 3. 공항별 활주로 관심 관찰지점(Hot Spot) 지정	<삭 제>

4. 공항시각 보조시설 개선 5. 그 밖에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9조 (활주로 안전증진 활동 등 Promotion) 위원회 위원장은 활주로 안전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주로 안전증진 활동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제9조(활주로 안전증진 활동 등 Promotion) 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위원회 ----------.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활주로 침범 Runway Incursion) ① 제2조11호에 따른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설정된 구역 및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은 비행장 기동지역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공항운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담당 기관이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한다. 1. 활주로 2. 활주로와 활주로 정지 위치 사이의 표면 ② 제2조11호에 따른 항공기,

	차량 또는 사람이 “부적절하게 위치하는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공교통관제사의 허가 또는 지시 없이 제1항에 따른 보호 지역에 침범한 경우 2. 항공교통관제사의 부적절한 허가 또는 지시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 지역에 침범한 경우 ③ 지방항공청은 소속 기관에서 발생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7호에 따른 항공안전문제(Safety Issue) 중 활주로 관련 사항은 해당 사건으로부터 위해요인 식별, 개선조치 필요사항 확인, 안전권고 발부 등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자체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5에 따른 활주로 침범 분류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비행장 기동지역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활주로침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정지선등과 활주로침범 자동경고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항공교통관제사 절차(Air Traffic Controller Procedures) <신 설>	<삭 제> 제3장 항공교통관제사 업무 절차(Air Traffic Controller Procedures)
제10조(복명복창 요구 Read back requirements) ① 복명복창 요구는 비행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주(Note) : 엄격한 복명복창 요구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 또는 지시를 조종사와 관제사간의 착오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다.	제11조(복명복창 요구 Read back requirements) ① 항공교통관제사는 조종사 및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복명복창을 요구하여 허가사항 및 지시사항이 올바르게 이해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복창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항공로 허가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항상 복명복창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항로 허가사항 2. 활주로 상에서 행하여지는	② 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복창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복창에 틀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한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항공로 허가사항 2. 활주로 상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허가 및 지시사항 3. 관제사에 의해 발부되었거나

모든 허가 및 지시사항 3. 관제사에 의해 발부되었거나 ATIS(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에 포함된 사용 활주로, 고도계 수정치, 2차 감시레이더 코드 및 고도・방위・속도 지시 4. 인지하고 수행하여야 하는 조건부 허가를 포함한 기타 허가 또는 지시의 경우 명확하게 지시하기 위하여 복창하도록 하거나, 'Acknowledge(이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해했는지를 알려 달라)'하도록 한다.	ATIS(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에 포함된 사용 활주로, 고도계 수정치, 2차 감시레이더 코드 및 고도・방위・속도 지시 4. 그 외의 허가사항(조건부 허가를 포함) 및 지시사항은 이해하였고 그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복창하도록 하거나 이해여부(Acknowledge)를 알리도록 한다.
<신 설>	③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항공교통관제사-조종사간 데이터통신(CPDLC)에 의하여 항공교통관제 허가 또는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복창을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④ 항공교통관제사는 활주로침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지시를 하는 경우 항공기 조종사, 차량 등의 운

	전자 및 사람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활주로의 진입(enter) 2. 활주로 착륙(land on) 3. 활주로 이륙(take off from) 4. 활주로 진입 전 정지(hold short of) 5. 활주로 횡단(cross) 6. 활주로 상의 주행(taxi) 및 역주행 (backtrack)
제11조(비행허가 발부 Issue of en-route clearance) ① 관제사는 항공기가 지상이동(Taxi)을 시작하기 전에 발부하여야 한다. 만약, 항공기가 지상이동을 시작한 경우, 활주로 진입 전까지의 허가제한을 두어 발부하여야 한다. ② 관제사는 비행허가 통보 시, 이륙(Take-off) 또는 사용 활주로로 진입(Enter an active runway)하라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륙(Take-off)이란 용어는 항공기 이륙을 허가(Cleared for take-off)하거나, 이륙을 취소(Cancel a take-off clea	제12조(비행허가 발부 Issue of en-route clearance) ① ---------- 비행허가(En-route Clearance)를 발부----------. ② ----------. <후단 삭제>

rance)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③ 이륙(Take-off)이란 용어는 항공기 이륙을 허가(Cleared for take-off)하거나, 이륙을 취소(Cancel a take-off clearance)할 때에만 사용하여야하며 그 외의 경우 이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Departure” 또는 “Airborne”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지상이동 지시 Taxi instructions) ① 관제사가 허가한 지상이동 지시는 허가지점 제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허가지점 제한사항은 주어진 진행을 위한 다음 허가를 할 때까지 항공기가 정지해야 할 지점으로, 출발 항공기를 위한 허가제한은 통상적으로 사용 활주로의 Holding Position이다. 다만 이 지점은 공항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제13조(지상이동 지시 Taxi instructions) ① ----------. ------ --- Position(Point)이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상이동 목적으로 활주로를 사용하려는 항공기는 활주로 횡단 전 또는 활주로 진입 전에 계류장관제탑에서 관제탑 또는	③ ---------- 국지관제사로 관제 ---------

지상관제사에서 국지관제사로 그 권한을 이양하여야 한다.	----------.
④ 관제사는 조종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을 적절히 구분하여 순서에 따라 허가 또는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④ ----------.
예(Example)	예시(Example)
1.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 RWY 06R로 지상이동을 하려고 한다. 항공기의 지상이동 경로는 유도로 A 및 B 그리고 RWY 06L 횡단이다. 활주로 RWY06L에 대한 Holding Position은 유도로 B의 B2이다.	1.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PILOT : CROSS 06L, TAXI TO HOLDING POINT 06R ABC346.	마. PILOT : CROSS 06L, TAXI TO HOLDING POINT 06R ABC346. 주(Note) : ICAO 비표준용어인 “Position and hold”은 북미에서 2010년까지 Line-up 허가로 사용된 용어로 복창 내용 경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제13조(동일 활주로 상의 다수 정	제14조(동일 활주로 상의 다수 정

대 Multiple line-ups on the same runway) 관제사는 동일 활주로 상의 다른 지점에 있는 한 대 이상의 항공기에게 정대 지시를 발부할 수 있다. 예(Example) 1.·2. (생 략)	대 Multiple line-ups on the same runway) ----------. 예시(Example) 1.·2. (현행과 같음)
제14조 (정지선 Stop bars) 관제사는 우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항공기가 활주로 횡단 또는 진입 중일 때 활주로 정지선을 횡단하라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5조(정지선등 Stop bars) ① 정지선등(Stob bars)이 설치된 비행장 관제사는 항공기와 차량을 정지·대기시킬 목적으로 정지선등을 점등하며 항공기와 차량을 진행 시키려면 정지선등을 소등하여야 한다. ② 관제사는 정지선등이 켜진 경우 항공기와 차량에게 활주로 진입 또는 횡단을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지선등의 조작 불능 등 우발적인 상황에서는 항공기 유도 차량(Follow Me Car) 등 비상절차를 사용하여 점등된 정지선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제15조(이륙절차 Take-off procedures) ① 관제탑과 계류장관제탑이 분리되어 있는 공항의 관	제16조(이륙절차 Take-off procedures) ① 계류장관제업무가 ---------- 공항에서는

제사는 이륙절차 수행 전 또는 Holding Position 접근 전에 항공기는 계류장관제탑에서 관제탑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 Position(Point) -- 계류장관제기관에서 관제탑으로 관제권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근무교대 Position Hand-over) 관제사는 근무교대 시 모든 교통상황을 인지하여야하며 근무교대 점검표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이양 Hand-over) 관제사가 관제권을 이양 할 때에는 모든 교통상황을 포함하여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수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기억보조기구 Memory aids) ① 관제탑은 활주로에 차량·장비 등이 진입하여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 사용이 일시 중지된 경우에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기억보조기구를 활용하여 활주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억보조기구 Memory aids) ① ---------- 차량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브리핑 Briefing sessions) 관제탑은 활주로 안전문제에 대	제19조(브리핑 Briefing sessions) 비행장을 담당하는 항공교통관

한 교훈학습 절차로서 근무교대 상·하번 시 브리핑 또는 디브리핑을 일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 발생한 활주로 관련 사건이 있었다면 반드시 포함하여 브리핑 또는 디브리핑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기관은 활주로 안전관련 사항을 ----------. ---------- 있었다면 해당 사항을 ----------.
제4장 조종사 절차(Flight Crew Procedures) <신 설>	<삭 제>
	제4장 조종사 업무 절차(Flight Crew Procedures)
제19조(일반사항 General) ① (생략)	제20조(일반사항 General) ① (현행과 같음)
② 항공사는 조종사의 인적요인에 의한 에러(Human error)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별표 2]와 [별표 3]에 예시된 활주로 침범 예방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표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 실수 및 착오---------- ---------- ---------- ----------.
제20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1조(복명복창 의무 Read back responsibility) ①·② (생 략)	제22조(복명복창 의무 Read back responsibility)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항상 복창하여야 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인지하고 수행하여야 하는 조건부 허가를 포함한 기타 허가 또는 지시의 경우 명확하게 지시하기 위하여 복창하도록 하거나, 관제사가 'Acknowledge(이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해했는지를 알려 달라)' 한 모든 사항	4. 그 외의 허가사항(조건부 허가를 포함) 및 지시사항은 이해하였고 그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복창하거나 이해 여부(Acknowledge)를 알린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2조(조종사 절차 Flight crew procedures) 항공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지상이동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조종사 절차 Flight crew procedures) ---------- ---------- ----------.
1. 안전 운항을 위해 지상이동(Taxi operations)을 위한 사전 계획(Planning)을 수립한다. 지상이동을 위한 계획은 조종사의 비행계획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필수 사항으로 두 단계로 종결된다.	1. ---------- ----------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관제사로부터 지상이동 지시를 받은 경우 지상이동 지시내용을 검토하고, 부적절한 경우 수정을 요	나. ---------- ---------- ---------- ----------

청할 수 있으며 지상이동 경로가 확정되면 반드시 관재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관제사----------.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조종사간에는 지속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지상이동 중의 위치, 과정 및 다음 진행위치에 대하여 상호 확인 활동을 계속하여야 한다.	4. ---------- ---------- ---------- ---------- ----------.
가. 상황인식은 다른 항공기에 대한 관제사의 지시 또는 허가발부를 확인함으로써 증가된다. 조종사는 항공기의 호출부호가 다른 항공기와 비슷한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하여 다른 항공기의 지시 또는 허가를 따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 조종사는 다른 항공기의 지시 또는 허가를 따르지 않도록 유사 호출부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모든 활주로에서 진입 또는 횡단하기 전에 조종사는 충돌방지를 위해서 착륙하거나 착륙 접근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를 조종사 상호간 구두	나. ---------- ---------- ---------- ---------- ----------

로 재차 확인한다. 구두 확인결과 조종사 상호간 어떠한 차이점이나 혼란이 있다면 항공기를 멈추어야 한다. 다만, 항공기가 활주로 상에 있는 경우에는 ATC 지시나 안전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주로 상에서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확인하여야 한다. ----------.
다. 조종사는 특히 시정이 악화되거나 야간에 “Line Up and Wait”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경계를 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유도로에서 활주로로 진입할 때는 활주로 및 착륙하거나 착륙 접근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살펴야 한다. 반드시 ATC와 교신을 유지하여 활주로 상에서의 충돌 잠재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조종사는 특히 시정이 악화되거나 야간에 “Line Up and Wait”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경계를 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활주로에 진입, 착륙, 이륙, 횡단, 진입 전 대기, 활주로 상 주행 및 역주행하는 경우 ATC와 교신을 반드시 유지하여 활주로 상에서의 충돌 잠재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1) 활주로 이 · 착륙 중에 “Line Up and Wait” 대기 지시를 할 때 관제사는 조	(1) 활주로 이 · 착륙 중에 “Line Up and Wait” 대기 지시를 할 때 관제사는 조

종사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조종사는 이륙허가를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항공기를 살펴야 한다.	종사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조종사는 이륙허가를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항공기를 살펴야 한다.
(2) “Line Up and Wait” 등 대기지시를 받은 후 적당한 시간이내에 이륙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반드시 관제사를 호출하여 다음과 같이 교신한다.	(2) “Line Up and Wait” 등 대기지시를 받은 후 적당한 시간이내에 이륙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반드시 관제사를 호출하여 다음과 같이 교신한다.
“(Call sign) holding in position (Runway designator or intersection)”	“(Call sign) Ready for Departure (Runway designator or intersection)”
주(Note) : “Holding in Position“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분석한 결과 “Line Up and Wait“를 지시한 시간과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한 시간	주(Note) : 활주로에 정대하여 대기중인 (Line up and wait) 상황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분석한 결과 “Line Up and Wait”를 지시한 시간과

사이의 경과시간은 2분 이상 이었다. 조종사는 예정되는 지연에 대하여 관제사로부터 조언이 없을 때는 대기 지시 후 시간 경과를 고려하여 관제사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한 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2분 이상이었다. 조종사는 예정되는 지연에 대하여 관제사로부터 조언이 없을 때는 활주로에 정대 및 대기 지시 후 시간 경과를 고려하여 관제사에게 활주로 상에 대기하고 있음을 알리는 등 적절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라. ~ 아. (생 략)	라. ~ 아. (현행과 같음)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23조(항공기 외부등화의 이용 Use of exterior aircraft lights to make aircraft more conspicuous) ① (생 략)	제24조(항공기 외부등화의 이용 Use of exterior aircraft lights to make aircraft more conspicuous)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종사는 항공기 장비품, 운용제한, 조종사 절차와 일치시켜 다음과 같이 외부등화(Exterior Lights)를 켜야 한다.	② ---------- 다음 각 호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장 차량・장비 운행절차(Ground Vehicle Operation On Airport) <신 설>	<삭 제>
제24조(일반사항 General) 공항운영자는 관할 공항의 규모, 혼잡성 및 운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운영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프로그램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행장내에서의 사람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등에 관한 사항은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차량 등 운행절차(Ground Vehicle Operation On Airport) 제25조(일반사항 General)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이동지역에서 인원 및 차량 등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갖는다.
<신 설>	② 공항운영자는 관할 공항의 규모, 혼잡성 및 운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이동지역을 출입하는 인원 및 차량 등을 관리하고 출입 및 운영과 관련한 훈련 및 절차 등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이 프로그램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행장에서의 사람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등에 관한

	사항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Note) : 차량 등의 운전자가 비행장에서 다수의 활주로 침범을 일으킴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인원·차량 등을 활주로 안전 관련 고위험 대상으로 간주하여 통제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이행 Implementation) ① 공항 내에서 차량·장비의 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공항운영자에게 있다.	제26조(이행 Implementation)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항의 이동지역 내 차량 등의 요건 등 출입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차량등의 운전자 요건 2. 차량 등의 요건 3. 기동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등의 요건 4. 등록된 차량 등의 등록기호 표시 5. 차량 등의 안전도 검사 6. 그 외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공항운영자는 공항의 이동지역에서 차량·장비의 운행 및 출입에 관한 절차를 제정하여야	② 공항의 이동지역 내에서 건설작업 또는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임시로 사용되는 차량등의

한다. 이 절차에는 차량·장비 운전자의 요건, 차량·장비의 요건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한다.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③ 또한, 공항의 이동지역 내에서 건설작업 또는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한 일정 작업 기간 동안 사용되는 차량·장비의 운행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 내용을 해당 지방항공청에 통보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동지역에서 차량 등의 운행 절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동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등은 무전기가 장치 또는 휴대되어 있거나 무전기가 장치 또는 휴대된 차량 등의 호송을 받아야 한다. 2. 속도제한 3. 다음 사항의 금지 가. 다른 차량 등 또는 지상이동중인 항공기 앞지르기 나. 시동중인 차량 등으로부터 운전자 이탈 다. 서비스 중인 항공기 밑으로 운행 라. 운행이 허용된 곳 이외의 여객 탑승교 밑으로 운행 4. 차량 등이 등화를 켜야 하는 때를 규정 5. 가능한 한 전용도로의 경계

	선 및 주행선 이용 요건 6. 차량 등의 주정차가 가능한 곳과 금지된 곳의 위치 7. 통행우선권(예, 항공기, 비상차량 등, 기타 차량 등) 8. 차량 등의 서비스 장소 9. 이동지역에서 무전기 고장에 대한 절차 10. 이동지역에서 차량 등이 포함된 모든 사고의 보고 11. 차량 등의 탑승객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
제26조 (차량·장비 요건 Vehicle requirements)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의 이동지역 내에서 공항운영 활동 지원에 필요한 차량·장비 외에는 그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차량·장비의 요건은 공항, 차량·장비 형태 및 운용 장소 등에 따라 다양하다. 차량·장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장비의 등록 2. 등록된 차량·장비의 등록기호 표시 3. 차량·장비의 안전도 검사	<삭 제>

② ①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27조 (차량・장비 운전자 요건 Vehicle operator requirements) ① 공항에서의 차량・장비 운전은 일반도로에서 운전 중의 상황과 다름으로 공항 이동지역에서 차량・장비의 운전자는 공항운영자로부터 운전자 승인을 받고 운전・조종하여야 한다.	제29조(차량 등의 운전자 요건 Vehicle operator requirements) ① 공항의 이동지역 내에서 차량 등의 운전자는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공항운영자의 운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전자는 공항의 제 규정에 관한 지식을 겸비하도록 공항운영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 공항 이동지역---------- 교육훈련 및 평가를 ----------.
<신 설>	③ 공항운영자는 운전자 교육훈련 및 평가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운전자 지침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8조 (공항의 차량・장비 Vehicle on airports)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의 이동지역에서 차량・장비 및 보행자의 활동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동지역에서의 차량・장비는 항	제27조(공항의 차량 등 Vehicle on airports)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공항 이동지역에서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활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공기 운항・정비 서비스, 화물・여객 서비스, 비상서비스 및 공항유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역에서의 차량・장비는 이동지역 상에 있는 항공기의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비상차량 및 장비와 이동지역의 정비・검사를 위해 필요한 차량 및 장비로 제한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차량・장비는 이동지역을 가로지르지 말고 정해진 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량・장비가 활주로를 가로질러야 하는 때에는 활주로 중간지점 보다는 끝에서 하여야 한다. ④ 이동지역에서 늘 운용되는 차량・장비에는 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반드시 표식 또는 깃발을 달아야 하며 야간에는 적절한 등을 켜야 한다.	1. 항공기 운항・정비 서비스 2. 화물・여객 서비스 3. 비상 상황 대응 4. 공항유지 지원 ②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이동지역 내 비일상적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 1. 이동지역 작업 2. 항공기 전시 및 에어쇼 3. 중요인사의 출발・도착 영접 4. 상업사진촬영 5. 그 외 관할 지방항공청과 협의된 사항 ③ 공항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비일상적인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동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 (차량・장비의 운행 Vehicle operations)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에서 차량・장비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운행하기 위한	제28조(차량 등의 운행 Vehicle operations) ① 공항 이동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절차를 개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동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장비는 무전기가 장치 또는 휴대되어 있거나 무전기가 장치 또는 휴대된 차량·장비의 호송을 받아야 한다.

2. 속도제한

3. 다음 사항의 금지

가. 다른 차량·장비나 지상 이동중인 항공기 통과

나. 시동중인 차량·장비로부터 운전자 이탈

다. 서비스 중인 항공기 밑으로 운행

라. 운행이 허용된 곳 이외의 여객 탑승교 밑으로 운행

4. 차량·장비가 등화를 켜야 하는 때를 규정

5. 가능한 한 전용도로의 경계선 및 주행선 이용 요건

6. 차량·장비의 주정차가 가능한 곳과 금지된 곳의 위치

7. 통행우선권(예, 항공기, 비상차량·장비, 기타 차량·장비)

8. 차량·장비가 서비스 받을

1. 차량 등은 이동지역을 가로질러서는 아니되고 정해진 차량 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2. 차량 등의 운전자가 활주로를 횡단해야 하는 때에는 관제탑의 별도 지시가 있지 않는 한 활주로 시단 또는 종단에서 횡단하여야 한다.

3. 이동지역에서 운용되는 차량 등은 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 또는 깃발을 달아야 하며 야간에는 상향등을 제외한 적절한 조명장치를 켜야 한다.

② 기동지역을 출입하는 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활주로(진입, 횡단 및 개방 등)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그에 따르겠다는 것을 무선교신을 통하여 복창하여야 한다.

장소 9. 이동지역에서 무전기 고장에 대한 절차 10. 이동지역에서 차량·장비가 포함된 전 사고의 보고 11. 차량·장비 내의 승객에 대한 차량·장비 운전자의 책임	
제30조 (차량·장비 출입통제 Vehicle access control) ① 공항의 이동지역에서 차량·장비 활동 통제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및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차량·장비 운전에 관련한 훈련 제공 및 절차개발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② 이동지역 상에 있는 차량·장비의 부주의한 진·출입은 이착륙을 하는 항공기 및 차량·장비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동지역에 있는 차량·장비를 통제하기 위하여 관제탑과 차량·장비 운전자간에는 무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항운영자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표준절차를	제30조(이동지역 운전자 교육 Airside Vehicle Driver Training) ① 공항운영자는 관할 공항 이동지역에 출입하여 차량 등을 운전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운영해야한다. 이동지역 운전자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점검 등을 목적으로 기동지역을 상시 출입하는 운전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모든 활주로(연결유도로 포함), 대기지점, 유도로 및 계류장 2. 활주로, 대기 지점, CAT-I/II

제정할 수 있다.	/III 운항과 관련된 모든 표지판, 표면 표지 및 등화 3. 유도로와 관련된 모든 표지판, 표면 표지 및 등화 4. 이착륙 또는 지상이동 항공기 주변 운행의 위험 5. 위험상황의 식별 및 완화 조치의 평가 6. ILS 보호구역, 안테나, RVR 장비 및 기타 기상 장비 등 항법 보조시설 7. 주로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표준 지상이동 경로에 대한 지식 8. 특정 지역 또는 경로에 대해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명명 규칙 9. 항공기 운항 안전을 보장하며 활주로 및 유도로를 개방하기 위한 공항별 국지 절차 10. 차량 등의 운전자가 차량 등의 경로 내에서 시각적으로 고정 및 이동 물체를 관찰하는 방법 11.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기타 통제부서와의 정확하고 간결

	한 교신방법 12. 이동지역에서 차량 등이 운행하고 있는 동안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주(Note) : 차량 등의 운전자의 주변상황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는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운전자는 차량 등에 주의력을 집중하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상황인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모호하거나 불완전한 교신, 운전자 피로와 스트레스 등은 상황인식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특히, 장비고장, 안개, 강우, 강설 등은 안전 운전 조건을 더욱 저하시키며 운전자의 상황인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신 설>	③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에서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상황인식을 증대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 혼잡, 고속질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등 경로에 표지 또는 표지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 (비상운행 및 기타 비일상적 운행 Emergency operations and other non-routine operations) ①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수의 비일상적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 비일상적 활동은 이동지역 작업, 에어쇼, 항공기전시, 중요인사의 출발 · 도착 영접, 상업사진촬영 등을 포함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비일상적인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심사에는 차량·장비를 포함하고 비일상적 운행을 위한 차량·장비의 운행절차를 구비하여야 한다.	<삭 제>	
제32조 (기본교육 Training) ① 훈련과정은 이동지역 종사자로서 이동지역에 출입하여 차량·장비를 운전하는 자(예정자 포함)에게 공항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며 반드시 초기교육(Initial)에 포함한다. 다만, 공항사정에 따라 정기교육훈련(Recurrent) 또는 보수훈련(Remedial)에 포함할 수도 있다.	<삭 제>	

② 공항운영자 등은 공항 내에서 차량·장비를 운전하도록 인가받은 자에 대한 훈련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인가자의 인솔 하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훈련은 요구되지 않는다.

③ 초기교육훈련은 이동지역 종사자로서 신규로 이동지역에서 차량·장비를 운전하는 자(예정자 포함)에게 실시하며 제정된 절차에 따라 이동지역에서 단독적으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능력이 있는 지를 시현해 보여야 한다.

④ 정기교육훈련은 이동지역 종사자로서 이동지역에서 차량·장비를 운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되 숙련도 수준을 만족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차량·장비 운전자의 공항출입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는 때에 정기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훈련은 공항운영자가 직접 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

다. 위탁할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는 훈련생의 시험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 (심화교육 Situational Awareness Training) ① 공항운영자는 차량·장비 운전자의 이동지역 상황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량·장비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훈련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량·장비 운전자가 차량·장비의 경로 내에서 시각적으로 고정 및 이동 물체를 관찰하는 방법 2.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기타 통제부서와의 정확하고 간결한 교신방법 3. 이동지역에서 차량·장비가 운행하고 있는 동안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주(Note) : 차량·장비 운전자의 주변상황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는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운전자는 차량·장비에	<삭 제>	

주의력을 집중하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상황인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모호하거나 불완전한 교신, 운전자 피로와 스트레스 등은 상황인식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특히, 장비고장, 안개, 강우, 강설 등은 안전 운전 조건을 더욱 저하시키며 운전자의 상황인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③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에서 차량·장비 운전자에게 상황인식을 증대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 혼잡발생, 고속질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장비 경로에 표지 또는 표지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활주로 침범 보고 등 Reporting of runway incursion. etc)	제31조(활주로 침범 보고 등 Reporting of runway incursion. etc)
① 공항에서 활주로 침범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한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및 공항운영자 등은 국토	① ---------- 별표 20의2-

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유효기간 Duration)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고시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2조(유효기간 Duration) ---------- 2026년 11월 30일----------.